

불법게임기[크레인게임기] 강제철거[예고] 공고

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2조(정의) 제6호 다목, 동법 시행령 제2조(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)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건물 밖에 불법으로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자진철거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38조(폐업 및 수거 등)제3항에 의해 강제 수거·폐기하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8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- 다 음 -

1. 공고기간 : 2019. 7. 18. ~ 8. 5.
2. 강제수거 예정일 : 2019. 8. 5.(월) 이후
3. 강제수거 예고 대상 및 위반 내용

연번	소재지	대표자	설치대수	위반내용	비고 (행정처분)
1	명물길 47 상가 앞	미상	3	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	수거·폐기
2	홍제원길 7 상가 앞	미상	1	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	수거·폐기

4. 게시장소 : 서대문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기타사항

가.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(2019.8.5.)내에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나. 강제 수거 예고 기간 내에 자진철거 하시면 강제 수거가 소멸됩니다.

다.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을 간주하여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강제 수거·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기타문의처 :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(☎02-330-1649)